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2em; margin: 0;">http://www.daedeok.go.kr</p>

제2021-95호
2021. 12. 10.(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7)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35호) 1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36호) 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1-137호) 3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38호) 4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1-139호) 5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고시 제2021-140호) 6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141호) 7

공 고(1)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1210호) 8

행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공고 제2021-1219호) 9

공 람									
--------	--	--	--	--	--	--	--	--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09호 (2021.12.7.)	정O희	석봉동 711-41	구거	69	진출입로	69	'17.04.01.~ '21.12.31.	'22.01.01.~ '26.12.31.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10호 (2021.12.10.)	현O호	평촌동 533-3	구거	199	진출입로	199	'17.01.01.~ '21.12.31.	'22.01.01.~ '26.12.31.

끝.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총형선좌표		평면직각총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564	-	-	417446.75	240415.02	세계좌표(재설치)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40-11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1년 10월 6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지적(㎡)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11호 (2021.12.08.)	아세아시멘트 (주)중부공장	신대동 535	하천	203	진출입로	203	'17.01.01.~ '21.12.31.	'22.01.01.~ '26.12.31.

끝.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종형선좌표		평면직각종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885	327486.69	236671.83	427794.32	236743.34	재설치
도근점	891	327516.62	236709.98	427824.25	236781.49	신설
도근점	2399	327550.26	236839.15	427857.89	236910.67	재설치
도근점	2400	327513.21	236772.47	427820.84	236843.98	재설치
도근점	2401	327484.46	236714.88	427792.09	236786.39	재설치
도근점	2410	327479.40	236872.68	427787.03	236944.20	재설치
도근점	2870	-	-	421673.72	237384.86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871	-	-	421538.69	237380.45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2872	-	-	421474.96	237390.40	세계좌표(신설)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49-5번지 일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11-42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1년 12월 02일 2021년 12월 01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피허가자	소재지	지목	변경허가 내용			
				목적	점유 면적 (㎡)	허가 기간	
						당초	변경
2021-12호 (2021.12.08.)	박O미	읍내동 543-23	구거	창고	298	'17.01.01.~ '21.12.31.	'22.01.01.~ '26.12.31.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석봉동 188-8	석봉로43번길 9	2021. 12. 10.	건물신축	석봉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4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평촌동 542-34	덕암로188번길 43-17	2021. 12. 10.	건물신축	덕암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8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31-4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일동 31-4 번지	32㎡	4m	38.9m	엄○용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2)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우리 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주차장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연 번	시 설 명	위 치	면 수	비 고
계	8개소		204면	
1	용정초등학교	신탄진동 127-28번지 일원	6	
2	석봉초등학교	신탄진동 131-9번지 일원	15	
3	중원초등학교	중리동 372-30번지 일원	49	
4	양지초등학교	법동 199-7번지 일원	24	
5	신탄진초등학교	석봉동 310-2번지 일원	13	
6	비래초등학교	비래동 115-36번지 일원	40	
7	푸른유치원	비래동 116-11번지 일원	16	
8	한라어린이집	목상동 866-5번지 일원	41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12. 10.(금) ~ 2021. 12. 30.(목) (20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1)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2)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ritzo1017@korea.kr)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1. 12. 10.(금) ~ 2021. 12. 30.(목)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3)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위치도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예고 대상 위치도



위 치 도

중원초등학교 일원 / 49면 제거



위 치 도

양지초등학교 일원 / 24면 제거





